

□ 動力資源部告示 第 83-25号 □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收入金の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損失補填에 관한 告示개정

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 및 石油事業基金에 의한 손실보전에 관한 告示(動力資源部告示, 第83-17)중 일부를 石油事業法시행령(이하 「令」이라 한다).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4. 10. 4

動力資源部長官

제 1호(石油事業基金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의 징수금액)의 가항, 나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17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수입석유 1배럴당 美 합중국통화2 89달러(비축기금 0.7달러 개발기금 0.1달러, 안정기금 2.09달러)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다만, 프로판, 부탄 수입시의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의 금액에 선적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납부일의 換率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장기저가수입분

1 메트릭톤당 169달러(비축기금+개발기금 : 69달러
안정기금 : 100달러)

(2) 現物市場 高價수입분

1 메트릭톤당 169달러(비축기금+개발기금 69달러
안정기금 : 100달러)에 現物市場 고가수입 CIF 가격과 장기저가수입 가격과의 차이의 60%를 비축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수입금으로 추가하되, 국내수급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동력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분에

대하여는 備蓄基金과 開發基金을 합한 금액 1메트릭톤당 69달러를 징수하고 安定基金을 아래 기준에 따라 산출 징수

① 기준 CIF 가격보다 低價도입분 : 1 메트릭톤당 100달러

② 기준 CIF가격보다 高價도입분

1 메트릭톤당 100달러 - (실도입 CIF가격 - 기준CIF 가격) × 1.261

○ 實도입 CIF가격은 “LPG in World Markets”

誌에 발표된 선적된 달의 CIF日本도착 최고 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되, 선적된 달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전월의 실적치를 준용하고, 프로판과 부탄중 原油種의 日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우디 公示價格의 프로판·부탄가격 차이를 기준하여 산출 적용

○ 기준 CIF가격

- 精油社도입분 : 프로판 497, 620원/톤, 부탄 496, 910원/톤을 선적후 30일 이내의 基金납부일의 換率로 환산한 달러화금액에서 169달러/톤을 차감하고, 이를 1.261로 나눈 금액

- 正友에너지(주)도입분 : 프로판 299.90\$/톤, 부탄 299.90\$/톤

부 칙

이 告示는 1983년 10월 1일 이후 통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1983년 9월 1일 이전에 선적된 프로판, 부탄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